

과태료의 부과금액(제22조제1항 관련)

위 반 행 위	근 거 법 령	과태료금액
1. 법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부금품모집 시에 모집종사자가 자신의 모집행위가 모집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18조제1항제1호	300만원
2.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언론기관, 금융기관, 그 밖의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기부금품을 접수한 자	법 제18조제1항제2호	400만원
3.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계 서류 등의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모집자나 모집종사자	법 제18조제1항제3호	400만원
4.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입·검사를 거부·기피 또는 방해한 모집자나 모집종사자		500만원